



유럽특허출원 공개 1백만건 돌파

- 유럽 특허청 -

유럽특허청(EPO)은 1백만번째 유럽특허출원을 공개하였다(공개번호 EP1,000,000 A1). 이번 특허출원은 “벽돌 제조 산업을 위한 녹색 벽돌 제조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이 특허는 1999년 11월 8일 네덜란드 회사인 BoerNimegen B.V.에 의해서 출원된 것이다. 이 발명은 벽돌을 전통적인 외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19개국-유럽연합의 15개국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및 사이프러스를 포함-에서는 특허출원은 처음 출원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데 다른 관련 특허청에서도 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출원인은 EPO를 포함한 다른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가진다. 출원의 공개는 권한 없이 발명을 모방하는 것에 대하여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1백만번째 특허출원의 공개는 이제 EPO 역사상의 또 다른 이정표를 나타낸다. 1977년에 설립된 EPO는 원래 1년에 최대한 30,000건의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오래 전인 1983년에 이 수치를 넘기고 1999년에는 122,000건 이상의 출원이 있었다.

인터넷 상표 조사의 향상

- 영국 특허청 -

영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새로운 장치가 생겨 상표 소유자 및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신생기업들이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상표 조사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영국 특허청은 웹사이트를 개선하여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상표 텍스트에서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이번의 조치로 동일 상표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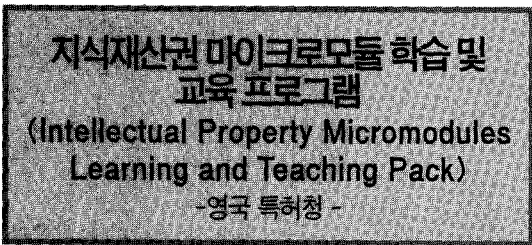
이제까지는 출원번호만으로 영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특정 상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상표 텍스트 혹은 상표 소유자의 이름을 가지고도 조사하여 현존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훌륭히 개선될 것이라는 특허청 고객들의 의견이 많았다. 텍스트 및 상표 소유자의 이름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는 이러한 고객의 의견에 따라 개발된 것이었다.

상표 보호는 인식할 수 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회사에게 중요하다. 시장 경쟁이 점점 심해져가고 기업들이 종종 매우 유사한 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자체뿐만 아니라 생산품이 다른 경쟁사들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이러한 식별성을 얻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한다.

상표라는 것은 한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해주고 모든 종류의 표식이며 도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상표는 단어, 로고, 3차원적 형상 그리고 때때로 소리 및 냄새를 포함하며, 인지도가 높은 기업에 있어서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및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상표는 수백만 혹은 수십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장래의 고객들이 상표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장려하면서, 특허청은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는 기업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특허청 상표국의 Peter Lawrence 국장은 말하였다. “우리는 고객들이 상

표 데이터베이스의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누구든지 현존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여 상충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초기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표 조사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조사 및 자문 서비스 혹은 상표 전문 변리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Koka Kola"는 유명상표와 너무나 유사하지만 인터넷상의 상표 조사에서는 Coca Cola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단어 혹은 구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충돌하는 상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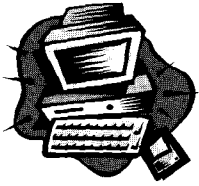
영국 특허청이 Bournemouth 대학과 연계하여 고안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마이크로모듈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Micromodules Learning and Teaching Pack)은 혁신을 보호하고 그 상업적 가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통찰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고등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의 산업연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종류로는 처음인 이번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기계공학에서부터 패션 디자인까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많은 기업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의장등록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이다. 현재 영국 경제성장의 미래적 수단으로 여겨지는 대학은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과학부 장관인 Sainsbury경은 이번 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의 위대한 기업이 정신을 키워 세계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등 교육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지식 기반 경제에서 뛰어난 연구를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기업 환경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자신의 작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강사,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장래 작품에서 자신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준다.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의장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교재를 통하여 별개의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수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 연습, 평가, 프린트물, CD-ROM, 유용한 관련 웹사이트, OHP등을 사용한다.

대학 대표자들은 이러한 교재의 이용 방법에 대한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최초의 워크샵은 6월 5일 Bournemouth 대학에서 6월 9일 벨패스트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에덴버러, 뉴캐슬, 맨체스터, 런던, 브리스톨에서 열린다.



특허법 조약 외교회의의 결과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들은 2000년 6월 1일 의견일치(consensus)로 특허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였다. 총 104개국과 3개의 국가간 기구(유라시안 특허 기구, 유럽 특허 기구,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 기구)가 조약의 최종안에 서명하였다. 2000년 6월 2일부터 2001년 6월 1일까지 회원국의 서명을 접수하며, 서명을 함으로써 서명 국가는 어느 때라도 조약의 비준(ratification)을 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내에 PLT에 서명하지 않은 WIPO 회원국은 언제라도 조약에 가입 승인(accession)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법 조약(PLT)은 10개국이 서명하고 비준하게 되면 발효된다.

PLT는 2000년 5월 11일부터 2000년 6월 2일까지 약 150개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모인 워싱턴 회의에서 마무리되었다. PLT는 5년간의 협상의 결정체이며, 특허법의 통일화로 향하는 주요 조치이다. PLT는 특허 보호 비용의 절감하고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다.

Dr. 카밀 이드리스 WIPO 사무총장은 PLT체택을 환영하면서, 협상 내내 만연했던 대표단의 긍정적인 협동 및 타협 정신을 치하하였다. "PLT의 성공적인 완성은 전세계적으로 특허 비용을 절감하려는 폭넓은 과정에서의 주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법적 실체의 통일화하여 결과적으로 특허보호의 단일화된 세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궁극적으로 특허관련 비용에서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의 각 지식재산권

청이 조사 및 심사 절차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때임을 지적하였다. 특허법에 관한 상설위원회(SCP)의 지난 회의에서, 그리고 WIPO 총회의 1999년 9월 회의에서, 상당한 수의 대표단이 PLT의 종결이 있고 난 후에도 특허법 통일화 문제를 더 깊이 거론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는 2000-2001년 WIPO 프로그램 및 예산에 반영되었다. SCP는 2000년 11월에 다음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일단 발효되면, PLT는 전세계적으로 국내 혹은 지역 특허 출원과 특허유지에 관한 공식적인 특허 절차를 통일화하고 효율화할 것이다. 특허 보호를 구하는 발명가는 출원의 거절과 그로 인한 권리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특정 형식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현재로서 이러한 형식은 각 나라마다 다양하다.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PLT는 발명가와 국가 및 지역 특허청 모두에게 다음을 포함한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

- 착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표준화된 양식과 간소화된 절차의 사용
- 발명가, 출원자 및 변리사들의 비용 절감
-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의 제거
- 특허의 개선된 효율성 및 낮은 운영비용
- 특허 출원 및 관련 연락 통신의 전자화 도입의 가능성
- 국제 출원의 양식 혹은 내용에 관해서 특허협력조약(PCT)하의 조항과의 통합함으로써 PLT 회원국가에서 최대의 특허 형식의 수를 예상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국 특허제도에 더 쉬운 접근
- 강제국 대리의 면제
- 국내 및 국외 출원에서 출원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높여줌
- 특정 기한 해태의 경우 권리의 구제 및 복권

-출원서(명세서)의 대부분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출원일자 획득의 가능성

PLT는 PLT 국제 출원의 요건을 국내 및 지역 법에 통합시킴으로써 국제적 간소화의 주요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PLT하에서는, 국내 및 지역특허 출원 그리고 PCT 국제 출원의 요건 및 절차가 통일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한 표준화된 공식 요건과 효율화된 절차를 이루게 될 것이다.

2000년 6월 2일에 43개국이 PLT에 서명하였다: 알제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부룬디,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공화국, 북한, 덴마크, 에스토니아, 감비아, 가나, 그리스, 하이티, 헝가리, 이스라엘, 이태리, 케냐, 키르키즈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 말라위, 나이지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사오 토메 프린시페,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스와질란드, 스위스, 토고, 터키, 우간다, 영국, 미국, 잠비아

**특허상표청에 모든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상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수료와 서비스, 즉 특허출원료, 특허 유지료, 등록 상표 출원료, 상표 갱신료 등과 같은 기본 수수료 대한 지불은 신용카드로 받겠다고 발표하였다.

USPTO는 종래에 신용카드 거래를 제한하여

특허 혹은 상표의 복사와 같은 정보 제품 혹은 상표의 전자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1999년 회계연도 동안 약 60,000건의 신용카드 거래를 진행시켰고 이는 총 7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중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상표 출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는 약 19,000건이었다.

1999년 11월 USPTO는 신용카드로 모든 특허 혹은 상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행정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현재로 USPTO는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 CARD®, 그리고 VISA®를 통한 수수료 지불을 인정하고 있다.

Q Todd Dickinson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겸 미 특허상표청장은 "우리 고객들이 신용카드 사용의 용이함을 인터넷상에서 더욱더 많은 PTO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는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수수료 지불이 좀 더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소규모 발명가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USPTO는 상무부내에서도 사용자 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미국국가기관으로 특허허여 및 상표 등록에 관련된 법률을 관장한다.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겸 미국 특허상표청장은 상무부 및 다른 연방 부처의 장관 및 기관장에게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1790년에 첫 특허가 허여된 이후로 6백만건이 넘는 특허가 발행되었다. 지난해에 USPTO는 161,000건의 특허를 발행하고 104,000건의 상표를 등록시켰다.



제18회 三極특허청 전문가회담 결과개요 - 일본 특허청 -

1. 개최일 장소

2000년 6월 14일(수)~ 16일(금) 특허청회의실
(동경)

2. 참가자

일본특허청 石井 正 特許技監
미국특허상표청 디터·호인케스 국제법무부부장
구주특허청 잭·미셸 부장관
옵저버로서 세계지적소유권기관
블러드·휴저 고문

3. 삼극특허청회담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및 구주특허청은 세계의 중요특허의 약 9할을 심사하고 있는 三極(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 공통하는 과제를 협력하여 해결할 목적으로, 1983년부터 매년 三極특허청 회담을 개최. 매년 봄에는 전문가회담을, 가을에는 장관회담을 개최. 금년은 18회.

4. 회담의 결과

三極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의 공유화 등의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회담에서는 첨단기술, 특히 비즈니스방법관련발명 및 유전자관련발명의 심사실무에 관하여 이하의 공통이해가 얻어졌다.

A. 비즈니스 방법관련발명

(1) 비교연구결과 및 삼청에 의해 확인된 실무 JPO(일본특허청) 및 USPTO(미국특허청)은 1999년 11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7회 삼극특허청장관회담에서 합의한「비즈니스방법관련발명에 관한 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미일 비교연구결과에는 이하와 같다.

(a) USPTO(미국특허청)과 JPO(일본특허청)의 실무는 양청이 모두 비즈니스방법 관련발명의 성립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기술적측면을 요구하는 점과 공지의 비즈니스방법을 컴퓨터상에 단순히 자동화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발명은 진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일치하였다.

(b) 미일비교연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EPO(유럽 특허청)의 의견에 기하여 三廳은 각각의 특허청의 비즈니스방법관련발명에 관한 현행실무가 이하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 컴퓨터에 의해 실현된 비즈니스방법이 특허적 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측면」이 요구된다.
- 보통의 자동화기술을 이용해, 인간이 하고 있는 공지의 업무방법을 단순히 자동화한 경우에는 특허성이 없다.

(2) 향후의 전개

비즈니스방법관련발명에 관하여 三廳은 이하와 같은 공통의 문제인식을 가지는것에 도달했다.

(a)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방법 그 자체는 옛날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방법은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서, 특허청이 이 분야의 문헌을 발견하는 것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

가 많다. 이는 비즈니스방법관련발명을 심사할 경우 본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자료정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선행기술의 가장 적절한 정보원을 특정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ser(사용자)측과의 협력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b)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이 비교연구에 있어서 비즈니스방법관련발명에 대한 질 높은 조사를 여하히 행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 분야의 심사에 관한 EPO의 견해를 고려하여 三廳은 다음 단계로서 이 분야에서의 선행문헌조사에 관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승낙하였다. 그리고 三廳은 새로운 비즈니스방법발명분야에 있어서 「공동서치·프로젝트」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B. 유전자관련발명

(1) 삼청에 의해 확인된 실무

1999년 6월 공표된 「바이오테크놀로지특허실무에 관한 비교연구(DNA 단편의 특허성)」결과에 기초하여 금회회담에서 논의된 결과, 삼국특허청은 유전자관련발명에 관한 각청의 현행 실무가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모든 核酸分子關聯發明(유전자관련발명: 完全長cDNA 및 SNPs을 포함)은 기능 또는 특정의 실질적 신뢰성있는 유용성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상이용 가능성, 실시가능요건 또는 기재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 單離·精製된 핵산분자관련발명(유전자관련발명: 完全長cDNA 및 SNPs을 포함)은 기

능 또는 특정의 실질적 신뢰성있는 유용성이 개시되고 또한 산업상이용 가능성, 실시가능요건 및 기재요건이 만족되면, 선행기술이 없고 (즉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고) 또한 그 밖의 거절이유가 없는 限 特許可能하다.

(2) 향후의 전개

이 분야에 있어서 각청의 특허실무에 관한 상호 이해를 한층 깊게 하기 위해서 삼청은 컴퓨터검색에 의해 얻어진 기존의 DNA배열과의 유사성에 기반 기능을 추정된 핵산분자관련발명(유전자관련발명)에 관하여 그 유용성이나 진보성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교연구를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특허법조약(PLT)의 채택

- 일본 특허청 -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가 2000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동조약이 6월 1일 채택되었다.

PLT는 각국마다 다른 국내절차를 통일화,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절차상 誤謬로 인한 특허권상실을 회복하는 등의 구제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조약이다.

금후 PLT는 10개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21조).

일본이 언제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미정이다.



1. 채택되기까지의 경위

- 1985년 7월 각국마다 相違한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적으로 검토를 개시.
- 1991년 6월 조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미국이 선발명주의의 허용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 1995년 5월 제도조화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先願主義등의 실제면이 외의 절차면에서 조화를 도모하는 것에 합의하고 논의를 개시.
- 1995년 12월 ~ 1999년 9월 5회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3회의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가 개최.
- 2000년 5월 ~ 6월 특허법조약 외교회의개최(2000년 6월 1일 조약채택).

2. 채택된 특허법조약의 주된 내용

채택된 특허법조약(PLT)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원일의 인정요건

- ① 관청이 下記 3개의 요소를 수리한 일을 출원일로 한다(제5조(1)).
 - (i) 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 (ii) 출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연락이 있는 표시
 - (iii) 명세서의 의견상 인정되는 부분(* 1)
- * 1: 클레임(특허청구범위)이 없어도 출원일은 부여된다.

- ② 명세서의 의견상 인정되는 부분(上記(iii))은 출원일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언어로 기재되어도 상관없다(제5조(2)).
- ③ 최초제출시 흠결이 있는 명세서의 일부분 또는 도면을 후에 보충 가능. 이 경우 출원일은 보충한 일이 출원일이 된다. 다만 당해흠결부분이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의 인정요건이 만족된 일로 된다(제5조(6)).
- ④ 먼저 제출한 출원의 출원번호등을 인용함으로써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과 置換할 수 있다(제5조(7)).

(2) 출원절차의 간소화 및 용역화

- ① 출원에 관한 최대한 요건으로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규정된 것을 준용. 출원인은 PCT출원절차요건과 다른 또는 추가할 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제6조(1)).
- ② 기재된 사항, 우선권의 신청 또는 번역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출원인은 증거, 증명 또는 인증등이 요구되지 않는다(제6조(6)).
- ③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약국관청에서 그 취지를 통지하고, 특히 통지 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제6조(7)).
- ④ 인정된 국제모델이 되는 원서등의 양식(* 2)에 대해서는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서 출원절차가 가능(제6조(2), 규칙 20).
 - * 2: 국제모델양식으로서 (i) 위임장, (ii) 성명 또는 주소변경의 기록신청, (iii) 출원인 또는 권리자변경의 기록신청, (iv) 양도증서, (v) 실시권의 기록 또는 기록취소의 신청, (vi)

담보권의 기록 또는 기록취소의 신청, (vii) 오류의 정정신청이 규정.

- ⑤ 파리조약에 기한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이 당해발명의 특허성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요구되지 아니한다(제6조(5), 규칙 4(4)).

(3) 절차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 ① 관청에 의해 설정된 기간(지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연장(※ 3) 또는 기간 만료후 당해처리의 계속(※ 4)이 가능(제11조). 이 선택은 계약국에 의한다.

※ 3: 기간의 연장은 (i) 기간만료전 또는 (ii) 기간만료후 일정기간내 신청에 의하고((i) 및 (ii)는 계약국의 선택), 기간만료시점부터 적어도 2개월간 인정된다.

※ 4: 기간만료후 처리의 계속은 기간만료후 신청에 의하고, 관청에 의한 통지후 적어도 2개월간 인정된다. 기간만료후 처리의 계속은 상기(ii)의 기간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국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下記의 절차기간(※ 5)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계약국은 구제를 규정하지 않아도 좋다(규칙 12).

- ※ 5: (i) 이미 기간의 구제가 적용된 기간에 대한 그 이상의 구제
(ii) 기간구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에 대한 구제
(iii) 특허료지불을 위한 기간에 대한 구제
(iv) 우선권회복등을 위한 기간에 대한 구제
(v) 심판을 위한 기간에 대한 구제
(vi) 당사자계절차를 위한 기간에 대한 구제

- ②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거나 또는 고의가 없음에도(unintentional) 불구하고(이 선택은 계약국에 의한다),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권리가 상실된 경우 그 권리는 회복된다(제12조) (※ 6).

※ 6: 권리가 회복되는 기간은 기간만료일로부터 12개월 또는 기간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원인이 소멸한 일로부터 2개월 가운데, 먼저 빨리 도래하는 것에 의해 만료된다. 다만 특허료지불에 관해서는 파리조약 제5조 2에 기한 유예기간(적어도 6개월)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또는 기간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원인이 소멸한 일로부터 2개월 가운데, 먼저 빨리 도래하는 것으로 만료된다.

다만 下記의 절차기간(※ 7)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계약국은 구제를 규정하지 않아도 좋다(규칙 13).

- ※ 7: (i) 심판에 관한 기간
(ii) 기간구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
(iii) 우선권회복등을 위한 기간에 대한 구제
(iv) 당사자계절차를 위한 기간

③ 우선권관련의 구제(제13條).

- (i) 우선권주장의 정정이나 추가가 가능(제13조(1); PCT규칙 26의 2에 준한 내용).
(ii) 후출원의 제출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또는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이 선택은 계약국에 의한다), 우선권기간(12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우선권주장은 회복된다(제13조(2)).
(iii) 우선권증명서(선출원의 사본)가 제출될 수



없어 우선권이 상실된 경우 원인이 출원인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우선권주장은 회복된다(제13조(3)).

(4) 대리의무사항의 완화

- ① 하기의 사항에 관해서는 각계약국은 대리를 의무지워서는 아니된다(제7조(2))
 - (i) 출원일의 목적을 위한 출원의 제출
 - (ii) (절차에 부수하지 않은) 요금의 단순한 지불
 - (iii) 규칙에 규정된 절차(규칙 7(1))
 - (iv) (i) ~ (iii)에 언급된 절차에 관한 관청에 의한 수령서 또는 통지의 교부

- ② 특허료의 지불은 어느 누구도 가능(제7조(2)).

(5) 서면출원의 허용과 전자출원

- ① 외교회의종료일부터 5년후 즉 2005년 6월 2일 이후에는 출원일의 목적을 위한 출원의 제출 및 기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제외하고, 계약국은 서면에 의한 제출의 배제가 가능. 다만 그 기일까지는 서면에 의한 제출을 인정하여야 한다(규칙 8(1)).
- ② 대량출원의 취급을 고려하여, 상기 ①의 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에 의한 제출이 그 성질 또는 용량에서 보아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국은 서면이외의 수단에 의한 제출의 요구가 가능(규칙 8(1)).

(6) 권리이전등의 등록

이전등록에 관한 신청은 구권리자 또는 신권리자 어느 일방에 의한 신청(단독신청)이 가능. 다만 계약국관청은 계약에 관한 정보 및 신청을 뒷받침하

는 서류를 신청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규칙 16, 규칙 17). 실시권(라이센스)등록신청도 동일하게 취급.

3. 특허협력조약(CT)과의 관계

특허협력조약(PCT)은 특허출원하려는 나라마다, 각각의 국에서 다른 출원절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번잡을 개선하여, 一個의 출원을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여 一個所 제출에 의해 복수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약이다. 한편 특허법조약(PLT)은 각국마다 다른 특허출원절차에 관하여 최저한으로 통일, 공통화가 가능한 방식적요건을 각국이 각각의 국내법령중에 규정함으로써 출원절차의 통일, 간소화를 도모하는 조약이다.

PCT(특허협력조약)와 PLT(특허법조약)는 그 대상이 되는 출원이 다르지만, 특허출원절차에 관해서는 양조약에서 정합성을 도모하고 있고, PCT 국제단계에서 도모된 통일성을 PLT국내출원절차에 받아들여 PLT출원절차중에 PCT에 기한 출원요건을 준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CT에 기한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을 PLT국내출원요건으로 인용하고 있다. 특히 PCT에 기한 국제출원의 원서양식에 포함된 내용 및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요구된 내용을 PLT원서양식에 인용하고 있다.

또한 PLT전자출원에 관한 요건도 PCT의 전자출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인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발행 2000-08